

2020년 2월 6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자재정책팀 팀 장 박경희(044-201-1891), 사무관 이상범(1892) / 제공일: 2월 5일(총 19매)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비료관리법」 개정으로 비료 품질관리 강화될 것으로 기대

《 주 요 내 용 》

- ◆ 금년 1월 9일 「비료관리법」 개정으로 부정·불량비료에 의한 농가피해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료 품질관리 체계 강화
 - 무상으로 유통·공급되는 비료의 품질관리 및 수입 비료·원료의 위해성 관리 강화, 거짓·과대광고 단속 강화로 유통질서 확립
 - 전국단위 행정인력을 갖춘 소속기관을 통해 품질관리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비료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월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법률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비료 품질제고 및 환경문제 대응

- 폐기물 처리를 위해 불량비료가 무상으로 공급·살포되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에도 비료공정규격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 중금속 및 병해충의 외부유입으로 인한 토양환경 및 식물에 위해를 막고자 수입제한 조치대상을 부산물비료에서 모든 비료로 확대하였다.
- 비료 생산·수입업자가 폐업하지 않고 휴업을 명분으로 비료 공장을 장기간 방치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6개월이상 휴업할 경우 신고의무를 신설하였다.
- 비료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사업자를 변경(친인척, 지인 등)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문제를 막기 위하여, 종전 비료업자의 행정처분을 승계하도록 하였다.
- 비료의 효과·효능 등에 대해 농업인이 오인할 수 있는 거짓·과대광고 금지를 통해 유통질서 문란 방지 및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② 품질관리 행정체계 개선

- 비료의 품질검사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단위 행정인력을 갖춘 소속기관을 통하여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폐지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으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 이번 개정된 비료관리법은 비료업체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충분히 두어서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비료관리 및 유통 질서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보통비료”란 부산물비료 외의 비료로서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이 정하여진 것을 말한다.	2. ----- ----- 제4조에 따라 ----- ----- 설정된 -----.
3. “부산물비료”란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副産物), 사람의 분뇨(糞尿), 음식물류 폐기물, 토양미생물 제제(製劑, 토양효소 제제를 포함한다), 토양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로서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u> 것을 말한다.	3. ----- ----- ----- ----- ----- ----- -----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
4.·5. (생략)	4.·5. (현행과 같음)
6. “비료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비료수입업자: 비료를 수입하여 <u>판매하는</u>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12조에 따라	나. ----- --- <u>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u> -----

현행	개정
신고한 자 다. (생략) 제3조(적용의 예외 등) ① (생략) ②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 을 영위하는 자가 그 영위과정 에서 나온 부산물을 이용하여 제 조한 <u>부산물비료</u>를 판매하거나 무 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공정규격의 설정등) ①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규격의 <u>설 정·변경·폐지</u> 또는 <u>부산물비료 의 지정·폐지</u>(이하 이 조에서 “공정규격의 설정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공정규격의 설정등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공정규격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른 공정규격 <u>설정 및 부산물비료 지정</u>의 고시가 되	----- 다.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의 예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비료</u>----- ----- ----- -----. 제4조(공정규격의 설정등) ① ---- ----- <u>설정·변경 또는 폐지</u>-----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관계전문가 등의 의 견을 들을 수 있다.</u> ④ (현행과 같음) ⑤ ----- <u>설정</u>----- -----

현행	개정
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수입하여 농업용으로 <u>판매하려는 자는 공정규격의 설정이나 부산물비료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공정규격이 설정되거나 부산물비료로 지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생산·수입하여 판매할 수 없다.</u> 다만, 시험용 또는 연구용의 경우에는 <u>공정규격 설정이나 부산물비료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도</u> 생산·수입할 수 있다. ⑥ 제3항의 <u>비료공정규격심의회</u>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위해성 비료 등의 수입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거나 병해충이 유입되어 토양환경 및 식물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u>보통비료 중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와 그 원료에</u>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대한 위해성이 있다고	----- ----- <u>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려는 자는 공정규격의 설정을</u> ----- -- <u>설정된</u> ----- ----- <u>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할</u> --. ----- <u>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비료를</u> ----- -----. <삭 제> 제10조(위해성 비료 등의 수입제한) ① ----- ----- ----- ----- ----- <u>비료</u>----- ----- ----- ----- --. ② ----- -----

현행	개정
④ 비료생산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 ----- ----- 이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u>변경신고</u>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비료생산업자가 그 비료생산업을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 -----<u>변경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휴업신고</u>----- ----- -----.
⑦ 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	⑦ -----<u>제6항</u> ----- ----- ----- ----- ----- ----- ----- ----- ----- -----.
	⑧ -----

현행	개정
록하려는 자는 시(<u>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2조(비료수입업의 신고) ① 비료를 수입하여 <u>판매</u>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 원료, 보증성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비료수입업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u>이내</u>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u><신 설></u>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u>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u>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u>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u>----- -----. 제12조(비료수입업의 신고) ① ----- ----- <u>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u>----- -----. ② ----- ----- ----- <u>이내</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③ 비료수입업자가 그 비료수입업을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미리</u>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 또는 휴업신고</u>-----

현행	개정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생략) 제13조(영업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비료업자</u>의 지위를 승계한다. 1. <u>비료업자</u>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u>비료업자</u>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u>비료업자</u>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신설>	-----. ⑤ -----제4항 ----- ----- ----- ----- ----- ----- -----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3조(영업의 승계) ① ----- ----- <u>비료</u> <u>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이하 “비료생산업자등”이라 한다)</u> --- -----. 1. <u>비료생산업자등</u>이 ----- 2. <u>비료생산업자등</u>이 ----- 3. ----- <u>비료생산업자등</u>이 ----- ----- ----- ② 제1항에 따라 <u>비료생산업자등</u>

[illegible]

현행	개정
보증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
② 비료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도· <u>진열</u> ·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 <u>보관·진열</u>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u>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아닌 자가 생산하거나 수입한 비료</u>	6. <u>비료생산업자등이</u> ----- ----- -----
7.·8. (생략)	7.·8.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제조 원료의 장부기재 및 보존) ① <u>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는</u> 비료의 종류별로 비료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구입처·수량 등을 장부(전자화된 장부를 포함한다)에 기재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제조 원료의 장부기재 및 보존) ① <u>비료생산업자등은</u>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품질 검사) ① 삭제	제18조(품질 검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생산·수입·보관·판매</u>	② ----- ----- ----- ----- ----- <u>생산 또는 수입하여 보관</u>

현행	개정
<u>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되는 비료의 품질을 검사할 수 있다.</u> ③ (생략) 제19조(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비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비료업자에게 그 판매중지·회수·폐기·양도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비료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비료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u>공정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부산물비료로 지정되지 아니한 비료</u> 3.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성분량(중량을 포함한다)과 실제 함유성분량(含有成分量)의 차이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u>기준을 초과한 비료</u> 4. 삭제 5. (생략) 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u>· 진열·판매되거나 유통·공급되는</u>-----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u>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비료</u> 3. ----- ----- ----- ----- <u>기준</u> <u>에 맞지 아니한</u> -- 5. (현행과 같음) 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현행	개정
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생략) 2. 삭제 3. (생략) 4.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료를 판매한 경우 5. 제14조제1항에 따라 표시된 보증성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6. ~ 9. (생략) ③ (생략) <신설>	----- -----. ----- -----. 1.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 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 5. ----- ----- ----- 보관·진열·판매· 유통하거나 공급한 -- 6. ~ 9.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거짓광고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비료의 성분, 효과, 제조 방법 등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 대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비료의 거짓광고·과대광고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한다.
제21조(과징금부과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생산업자 또	제21조(과징금부과처분) ① ----- ----- 비료생산업자등

현행	개정
<u>는 비료수입업자가 제20조제1항 제7호·제8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업정지처분으로 비료의 수급 불균형과 이로 인한 가격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부과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u> ② (생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u>비료생산업자나 비료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u> <u><신설></u>	<u>이</u>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u>비료생산업자등이</u> ----- ----- ----- ----- ----- <u>제21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등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제21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제13조에 따라</u>

현행	개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 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 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생략)	<u>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승 계한 비료생산업자등에게 승계된 다.</u> <u>② 제13조에 따라 비료생산업 또 는 비료수입업을 승계한 비료생산 업자등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 정제재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에 따라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승계한 비료생산업 자등(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 외한다)이 그 영업의 승계 시에 종전의 비료생산업자등에 대한 행 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비료생산 업자등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 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의 제한) ① ----- ----- -----. <삭 제> 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3. 제27조제2호를 위반하여 실행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종류의 생산업 및 수입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② (생략) 제24조(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업자, 제7조에 따라 비료를 공급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비료의 운송업자 또는 창고업자에 대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u>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를</u> 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농촌진흥청장에게</u> 위임할 수 있다. <신설>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업자, 제7조에 따라 비료를 공급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비료의 운송업자 또는 창고업자에 대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u>감독상 필요한 보고를</u> 하게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권한의 위임) ----- ----- ----- -----<u>농촌진흥청장 및 소속 기관의 장에게</u>----- 제27조(벌칙) ----- ----- ----- -----

현행	개정
있다.	-----.
1.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료를 <u>판매한</u> 자	1. ----- <u>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u> <u>공급한</u> -----
2. 제11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 니하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 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한 자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 를 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수입 하여 <u>판매한</u> 자	2. ----- ----- ----- ----- ----- <u>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u> <u>· 공급한</u> -----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5. 제1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도· <u>진열</u> ·판매·유통 하거나 공급한 자	5. ----- ----- <u>보관·진열</u> ----- -----
6. ~ 11. (생략)	6. ~ 11. (현행과 같음)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28조(벌칙)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설></u>	5. <u>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거</u> <u>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한</u> 자
제3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0조(과태료) ----- ----- -----.

현행	개정
1·2. (생략) 3.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시료 채취 또는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법률 제16122호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신설> 2. (생략) <신설> <신설> ②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현행과 같음) 법률 제16122호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1조(과태료) ① ----- -----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1조제5항에 따른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생산업자 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제3항에 따른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수입업자 4.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현행과 같음)